
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- 1580호

「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0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「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관리분야의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관리사무소장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의무 부과(안 제29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○ 일반우편 : (30103)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

○ 전자우편 : ljk1001@korea.kr

○ 전화번호 : 044-201-3380, 3382, 팩스 : 044-201-5684